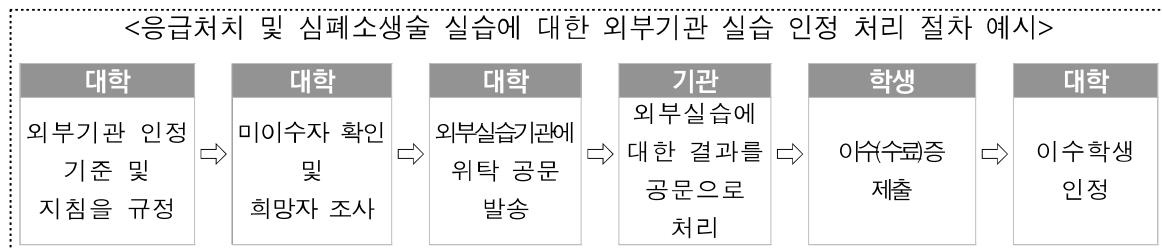


⑤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.

*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,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. 다만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

* '성인지 교육 1회'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·운영하는 것을 원칙. 다만, 성인지 교육은 온·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,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



*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단,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, 2018학년도 이후 실시·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.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

*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,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.

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한 후에는 이수(수료)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집하여 관리해야 한다.

*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해야 함

3) 성인지 교육 *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①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: 2회 이상

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 등)을 이수한 사람: 4회 이상

*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(2021. 2. 9.) :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

* '21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,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아 성인지 교육 이수 하지 않을 수 있음.

[예] 4년제(8학기) 교원양성과정(사범대 등)에 재학 중인 자가 2021년 2월 9일 기준, 7학기를 이수한 경우,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.

-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⑦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강, 연수,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
 - ⑨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,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.
 - ⑩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,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, 방식, 기간,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⑪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,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. 다만, ‘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’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.
- * ‘성인지 교육 1회’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, 온·오프라인 병행 가능하나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

▪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(예시)

-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 - ②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 -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 -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 - 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,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,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- ⑥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(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)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*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.
- ⑦ 편입학,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* 예시: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,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,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.
- ⑧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* 단,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,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 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